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심사보고서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석남 체육공원) -

2014. 5. 2(금)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4. 9.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4. 10.

라. 상정일자 : 2014. 4. 25.(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
- 질의 및 토론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 서구지역의 외형적·내적 확대에 의한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으로 여가·체육 활동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동 및 체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석남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및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여가장소 제공을 하고자 “주제공원(체육공원)”으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추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 6-8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 신설 : 주제공원(체육공원)
 - 결정면적 : 10,200㎡(약3,085평)
- 사업기간 : 2014. 10. ~ 2018. 12.
- 사업비 : 5,2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석남 체육공원	체육공원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	증)10,200	10,20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석남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위치 :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면적 : 1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의 석남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및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여가장소 제공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함

라. 추진경위

- 2012. 11. 28.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2. 12. 03.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 2013. 10. 07.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입안요청(서구→인천시)
- 2013. 11. 08.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 2013. 12. 16. : 관련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서구→인천시)
- 2014. 0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한강유역환경청)
- 2014. 02. 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조치계획 제출(시→한강유역환경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안건은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의 대상지 10,200㎡에 대하여 지역 균형화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의 여가 활동 및 문화체육의 기능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전 연령층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주제공원(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 28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3년 11월 11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노충희 외 1명은 동 사업으로 인해 대상지 주변의 잔여부지가 맹지화되어 가치하락의 소지가 있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 사업대상지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서측으로 경인고속도로와 공사 중인 인천지하철2호선 및 가좌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동측으로 원적산 등산로와 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대부분이 불법 농경지(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만큼 환경적 보전가치가 양호하지 못한 지역으로 산림훼손 및 학교주변지역 우범화 우려 등의 이유로 공원조성 요구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종합하여 보면 주변여건 및 이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문화체육 및 여가 장소를 제공하여 정주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2012년말 현재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중 미 조성된 토지가 32%에 이르고 있어, 도시 관리계획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과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공원 결정 예정지는 불법경작지 난립 및 인접부지 소유자들의 보상요구 등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문제 등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불법경작지 정비 등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구역 결정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공원결정으로 인한 공원복측과 석남배수지 사이의 잔여부지(석남동 산59-2, 산60-11번지) 맹지화에 따른 공원추가편입 계획 등 토지 소유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최근 배드민턴장의 경우 실내화 추세이나, 동 사업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배드민턴장이 부지 가운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동 계획에 실내화를 고려한 배치를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협의 시 명확한 검토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바람.

5. 토론요지

-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의 위치, 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체육시설의 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이한구 의원)
- 가. 찬 성 : 허인환·이한구·윤재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 의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재석의원 : 7명 전원 찬성)

7. 기타특이사항

- 없 음

붙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1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석남 체육공원) -

의안 번호	1140
----------	------

제출연월일 : 2014. 0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1. 제안사유

- 인천 서구지역의 외형적·내적 확대로 인한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으로 여가·체육활동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동 및 체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석남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및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여가장소 제공을 하고자 “주제공원(체육공원)”으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추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견청취내용

-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 6-8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 신설 : 주제공원(체육공원)
 - 결정면적 : 10,200㎡(약3,085평)
- 사업기간 : 2014. 10. ~ 2018. 12.
- 사 업 비 : 5,2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추진경위

- 2012. 11. 28.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2. 12. 03.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 2013. 10. 07.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입안요청(서구→인천시)
- 2013. 11. 08.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 2013. 12. 16. : 관련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서구→인천시)
- 2014. 0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한강유역환경청)
- 2014. 02. 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조치계획 제출(시→한강유역환경청)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석남 체육공원	체육공원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	증)10,200	10,20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석남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위치 :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면적 : 1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의 석남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및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여가장소 제공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함

5.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가. 주민 열람·공고

- 열람·공고 기간 : 2013. 11. 11. ~ 11. 25. (14일간)

성명	소유필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노충희	석남동 산6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부지결정을 반대함 동필지를 포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사항임 	미반영
황해성	석남동 산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토지의 경우 맹지화되어 전체적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사항이며, 편입된 토지는 향후 감정평가 실시 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겠음 	일부 반영

나.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인천광역시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별도협의 		
교통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별도협의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남배수지 진입도로에는 송·배수관(D1,350mm, 2열)이 매설되어 있음 • 송·배수관에 누수 등이 발생하면 보수에 장시간(24~72hr)소요되며, 발생장소가 활용구간이면 교통통제로 체육공원 차량 진출입 불가 • 향후 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석남배수지 진입도로 활용보다 단독 진출입로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석남배수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차량출입계획을 변경하여 남측 중로2-124호선으로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음 	반영

○ 서구청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해당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 우수·토사유출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토사유출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겠음 	반영
도시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별도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별도대책 강구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법 인허가를 득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법 인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견이 환경부 협의 시 반영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견이 환경부 협의 시 반영하겠음 	반영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p>·본 검토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금회 제시된 세부 검토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보완하여 반영·조치토록 하겠음.</p>	반영
<p>·검토보고서 내용 및 제시된 협의의견은 공사시 시공계획(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에 반영하여 재해예방에 활용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시 현장에 맞는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협의조건을 지속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p>·본 검토서와 협의의견은 공사시 시공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시행하고,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관리토록 하겠음.</p>	반영
<p>·공사기간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예측·검토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지역의 재해영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발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p>	<p>·공사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사항 및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재해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겠음.</p>	반영
<p>·사업시행자는 사업 착공전 협의권자에게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사업 착공전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준공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겠음.</p>	반영
<p>·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는 대상은 제외)</p>	<p>·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겠음.</p>	반영
<p>·「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조치계획(결과) : 공문에 파일로 첨부, 보완검토서 : 별책으로 제본].</p>	<p>·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겠음.</p>	반영
<p>·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음.</p>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였음.	반영
	·본 사업단계는 공원구역만 결정하는 단계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 사업단계는 공원구역만 결정하는 단계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1. 동 계획구역 인근에는 가좌여중, 석남배수지, 태화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등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진 또는 방음판넬 설치 추가 및 저소음기계사용 검토 제시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진 또는 방음판넬의 높이를 6m로 강화하였고, 저소음기계사용 검토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시하고 공사장비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제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시하고 공사장비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제시하였음.	반영
	2.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음.	반영
	3. 기타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우리부서 검토의견으로 필요시 관련부서(대기, 수질, 하수, 폐기물, 온실가스 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대기(온실가스), 수질, 하수, 폐기물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음.	반영
	·본 검토의견 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	·미반영 없이 전부 반영하였음	반영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량화하여야 함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의 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량화하였음.	반영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문사본을 부록에 제시하였음.	반영
·본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본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구청 환경보건과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전략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반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 할 것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 할 것임.	반영
	·환경관련법 의거 관련 인·허가를 득할 것	·환경관련법 의거 관련 인·허가를 득할 것임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본 계획은 공원구역 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 계획은 공원구역 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반영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변경) 조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시설물의 배치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하여야 함. - 특히,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 및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계획을 수립.	·실시설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변경) 조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시설물의 배치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하겠습니다. - 특히,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 및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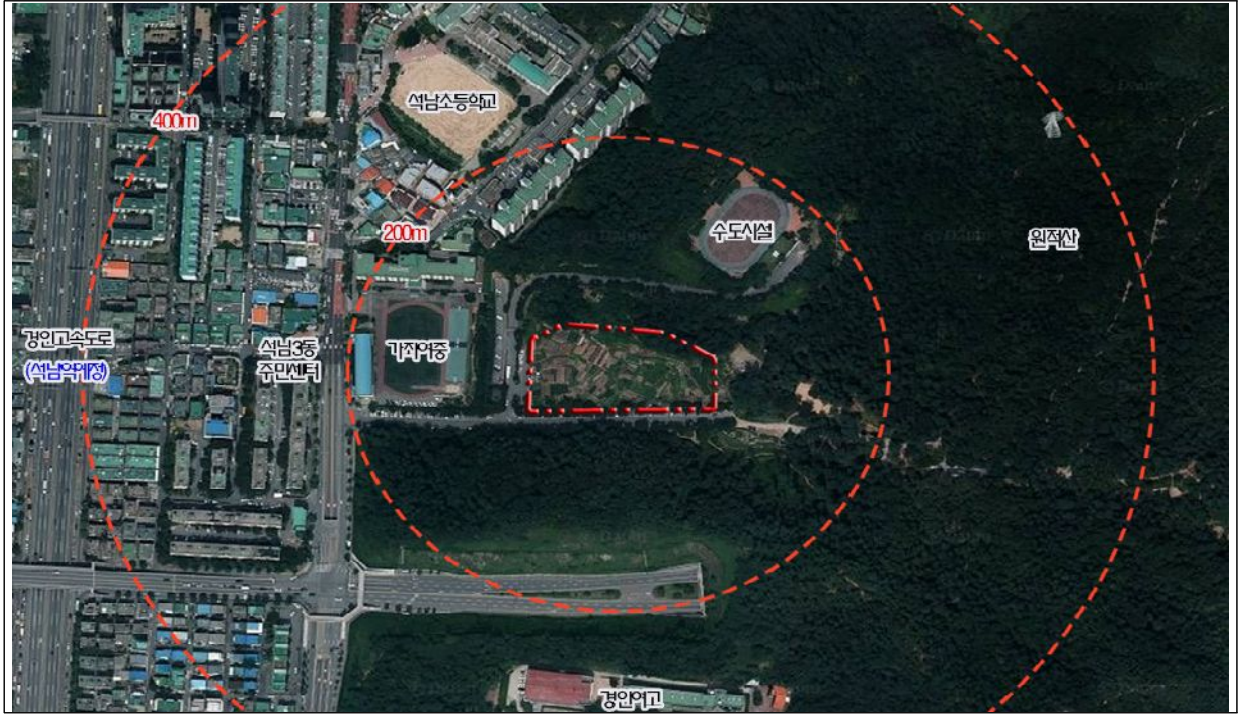
6. 향후 추진계획

- 2014.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1부.
3. 토지이용계획도(안) 1부.
4. 관련법령 검토 1부. 끝.

[붙임 1]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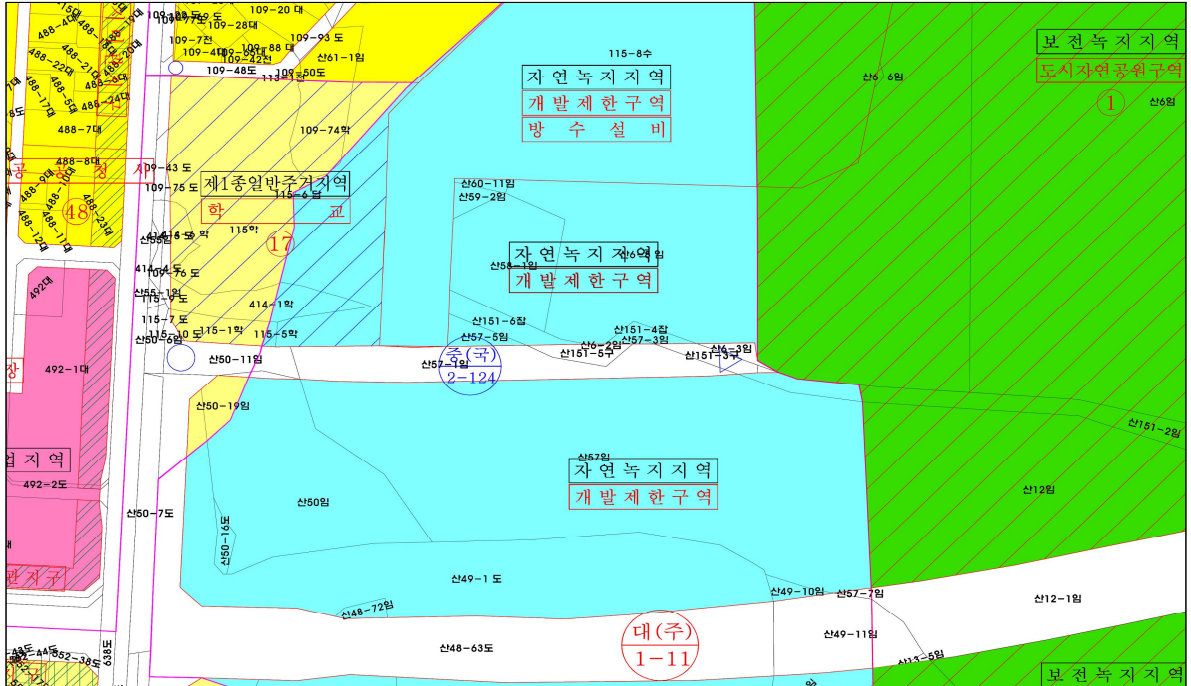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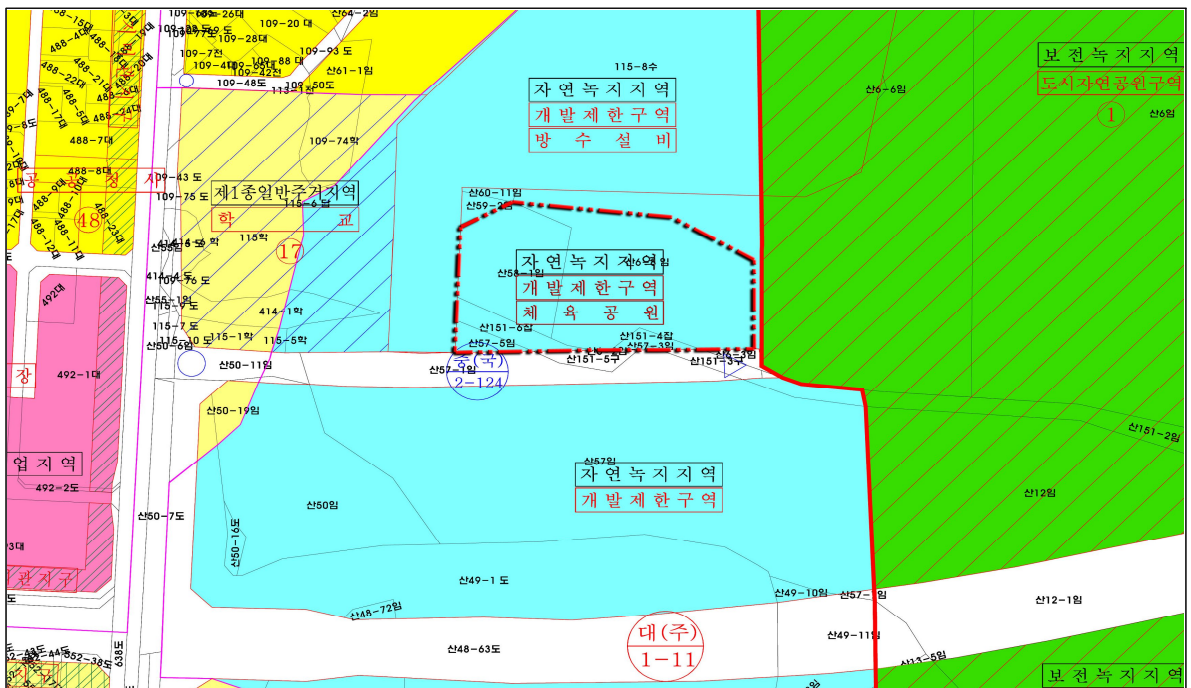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 정



○ 변경



[붙임 3]

토지이용계획도(안)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번호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계	-	10,200	100.0	
족구장	1	403	4.0	2면
풋살구장	2	700	6.9	1면
배드민턴장	3	485	4.8	3면
게이트볼장	4	285	2.8	1면
다목적운동장	5	351	3.4	
간이농구장	6	174	1.7	1면
도로	7	857	8.4	
광장	8	106	1.0	
휴양시설	9	112	1.1	
주차장	10	423	4.1	
관리동	11	100	1.0	
녹지		6,204	60.8	

[붙임 4]

구 분	관련 법 규 및 내 용	검 토 사 항	비 고
제 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5조 - 관(官)이 입안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서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 신청하는 사항임. 	적정
제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1 - 관(官)이 입안 신청하는 경우 토지주 동의요건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가 서구청장이 직접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토지 확보 또는 토지주의 동의 불필요 	적정
시 의 회 의 견 청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 공원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 제외대상 : 소공원,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공원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 	해당
토 지 적 성 평 가 검 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 - 제외대상 : 공간시설(체육공원, 유원, 묘지공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공원은 토지 적성평가 협의 대상임 	해당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7조[별표2] -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 m² 미만인 경우 -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m²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10,200m²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해당
사 전 재 해 영 향 성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별표1] - 제외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5,000m²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이 10,200m²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해당
교 통 영 향 분 석 개 선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 - 도로 : 총길이 5km이상인 노선 - 공원 : 부지면적 30만m²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이 10,200m²이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님. 	해당 없음